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54

발의연월일: 2021. 7. 26.

발 의 자:이헌승·김은혜·이양수

서병수・윤한홍・임이자

김도읍 · 김희곤 · 정동만

김상훈 • 이명수 • 성일종

조해진 · 송석준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, 현행법은 국 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용적 률의 범위와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「건축법」,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등 개별법은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 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들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, 현행법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 이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 및 허용 범위 등을 현행법에 정함으로써,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려는 것임(안 제78조제7항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이 법 및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이하까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복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또는 군수가 제30조제3항 단서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복 적용에 관한 적용례)

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경우(다른 법률에 따라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·결정·인가·협의 · 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78조(용도지역에서의	용적률)	제78조(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)
① ~ ⑥ (생 략)	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⑦ 이 법 및 「건축법」 등 다
		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
		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도
		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
		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
		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
		도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중복
		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용
		적률 완화 규정을 중복 적용하
		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
		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
		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
		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
		에는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
		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
		사・시장 또는 군수가 제30조제
		3항 단서의 공동위원회 심의를
		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
		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
		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
		<u>다.</u>